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 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06.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II.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단독주택용지(A-2)

기정				변경			
가구번호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34	1	1,298.5	4획지 분할	34	1-1	330.5	
					1-2	330.5	
					1-3	330.5	
					1-4	307.0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34	1	분할가능선의 변경 및 분할	적정규모 획지분할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